발 간 등 록 번 호
11-1352000-002419-10

www.mohw.go.kr

2024
요양보호사 양성지침

MINISTRY OF HEALTH & WELFARE

보건복지부

요양보호사 자격개요

1 개념 및 법적 근거

- 요양보호사란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합격하여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치매·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임

-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('08.7월)에 대비하여 종전 노인복지법상 인력인 가정 봉사원과 생활지도원보다 기능·지식수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 국가자격 제도(시·도지사 발급) 신설

노인복지법 제39조의2(요양보호사의 직무·자격증의 교부 등)

① 노인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.

②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9조의3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(이하 "요양보호사 교육기관"이라 한다)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·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.

③ 시·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부 신청일을 기준으로 제39조의13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교부해서는 아니 된다.

④ 시·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과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⑤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,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시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* 시행일('08.2.4) 이전의 요양보호사 교육은 법적효력이 없으며 자격증 발급도 불가함

* '10.4.26 이전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 이수 후 자격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서류(수료자명부, 실습확인서)검증 후 자격증 발급(구 노인복지법(법률 제9964호) 부칙 제2항 참조)

2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방법

● 자격취득절차 :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 이수 후 자격시험에 합격

<요양보호사 자격취득절차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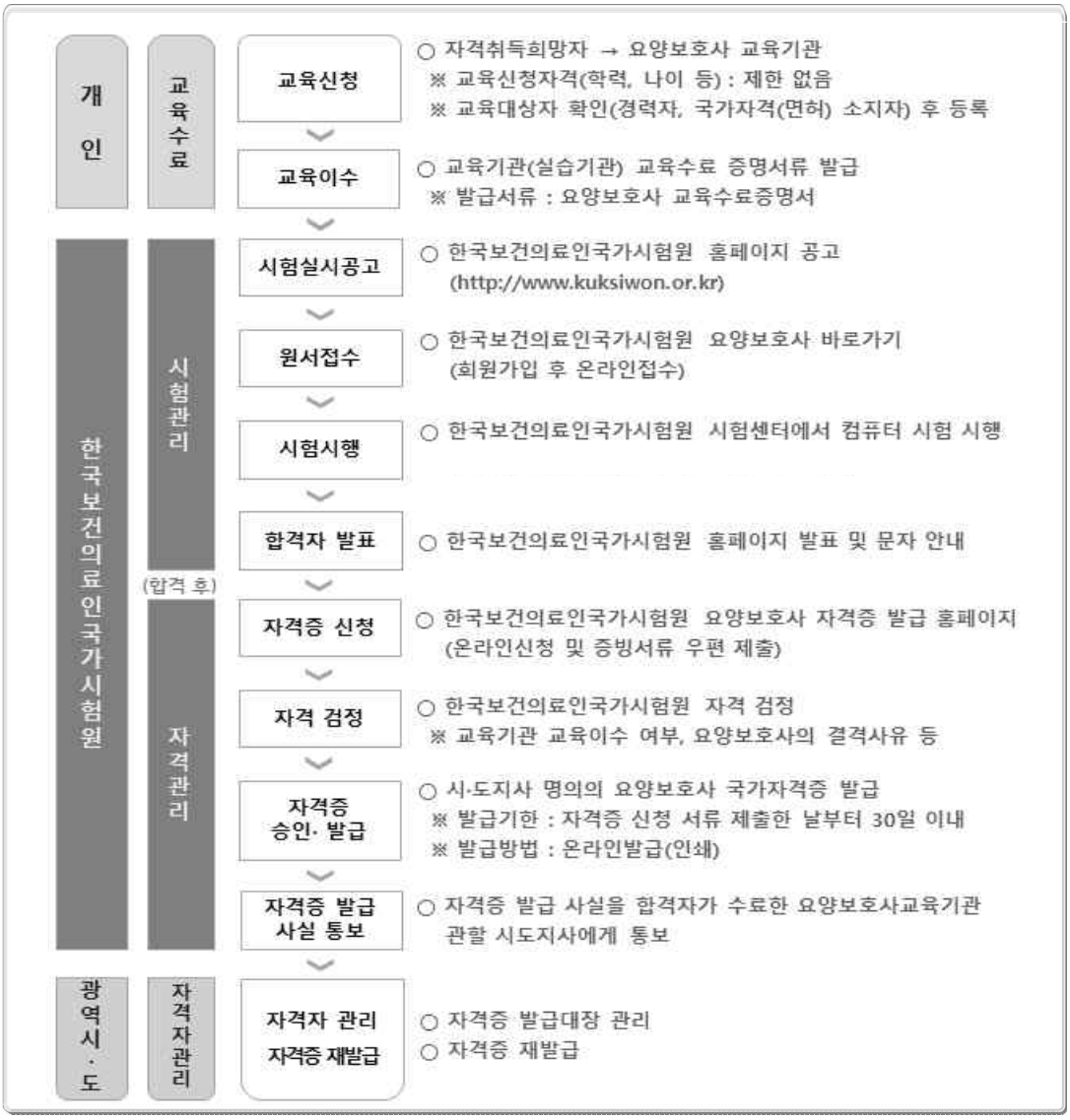

* 요양보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자격취득이 불가하므로, 교육기관은 사전에 교육생 모집 시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안내(붙임 16 수강등록안내서 참조)

3 요양보호사의 업무

- 업무내용 :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활동 서비스 제공

* 구 노인복지법에 의한 요양보호사 2급의 경우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는 일상생활활동 서비스만을 제공, 장기요양급여수급자가 아닌 복지대상자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활동 서비스 제공

※ 시설서비스 및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 대한 신체활동서비스 제외(노인주거복지,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만 취업가능)

<참고> 수급자(보호자)가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해서는 안되는 행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(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)

①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급여외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.

1.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
2.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
3.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

배치시설

- 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복지시설, 노인의료복지시설(노인전문병원 제외), 재가노인 복지시설
-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(요양/재가), 재가장기요양기관(방문간호 제외)

※ 요양병원 등 병원은 요양보호사를 배치할 법적인 의무가 없음

※ 간병인, 자원봉사자의 업무에 있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법적으로 요하지 않음

4 교육가능대상

- 국민
- 외국인 : 체류조건, 체류기한 등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자

1. 출입국관리법시행령 [별표1의2] 외국인의 체류자격(제12조 관련)
   - 13. 구직(D-10)비자 소지자
     * 국내 대학 졸업자에 한함(수강 전 졸업증명서 등 제출 필요)
   - 24. 거주(F-2) 비자 소지자
     * 「출입국관리법」 시행령 제23조 제2항 1, 2호에 한함
   - 26. 재외동포(F-4)비자 소지자
   - 27. 결혼이민(F-6) 비자 소지자
   - 29. 방문취업(H-2) 비자 소지자
2. 출입국관리법시행령 [별표1의3] 외국인의 체류자격(제12조의2제1항 관련)
   - 영주(F-5) 비자 소지자

5 교육시간

가. 요양보호사

구 분		총시간	이론	실기	실습
신규자		320	126	114	80
경력자	기타일반	223	126	57	40
	요양/재가	203	126	57	20
	요양+재가	183	126	57	0
국가자격 (면허)소지자	간호사	40	26	6	8
	사회복지사	50	32	10	8
	물리치료사, 작업치료사, 간호조무사	50	31	11	8

※ 실습과정 추가감면에 대한 사항은 8페이지(6.교육시간 감면대상) 참고

나. 노인복지법 부칙 제3항에 의한 교육과정(승급)

구 분	총시간	이론	실기	실습
경력자*	92	63	29	-
무경력자	160	63	57	40

* (구 노인복지법에 의한) 요양보호사 2급 자격취득 후 간병·요양업무 경력 1년(1,200H) 이상인 자

노인복지법 부칙

③ (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요양보호사1급 또는2급의 자격증을 취득한자는 제3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요양 보호사의 자격증을취득한것으로본다. 이경우요양보호사2급의자격증을취득한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교육과정을마친 자에한한다.

6 교육시간 감면대상

- 국가자격(면허)소지자 : 사회복지사, 간호사, 물리치료사, 작업치료사, 간호조무사
  - 감면내용 : 노인요양시설·재가노인복지시설·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국가자격(면허)소지자로서 해당 자격 관련 업무에 종사하여 1년(1,200시간)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현장실습시간 전체면제

- 경력자 : 경력증명발급기관(하단참고)에서 생활지도원, 유급가정봉사원, 간병인 등 간병요양관련 종사자*로서의 경력이 1년 이상(1,200시간 이상) 인정되는 자

  * 장애인활동보조인

  - 감면내용
    - ◆ 일반 : 실기 및 실습시간 각각 50% 감면
    - ◆ 노인요양시설에서 1년 이상(1,200시간 이상) 근무한 자 : 시설실습 전체면제
    - ◆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(1,200시간 이상) 근무한 자 : 재가실습 전체면제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에 각각 1년 이상(1,200시간 이상) 근무한 경력자는 실습 전체 면제

※ 경력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정해진 양식(붙임 19)에 따르되, 각 기관 양식에 따를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근무기간[기간(1년 이상)과 시간(1,200시간 이상)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]과 근무내용이 표시되어야 함

7 시험

가. 시험과목 등

시험과목	시험내용	문항수	시험방법 및 형태
필기	요양보호론*	35문항	객관식5지선다 필기형
실기	요양보호에 관한 것	45문항	

* 요양보호론 : 요양보호론 : 요양보호와 인권, 노화와 건강증진, 요양보호와 생활지원, 상황별 요양보호기술

나. 합격자 결정 : 필기·실기시험 각각 만점의 60% 이상 득점한 자

다. 응시자격 : 시험시행일 전까지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수료한 자

※ 단, 합격자 발표 후 서류심사과정에서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될 때는 합격이 취소됨

8 자격증 신청

가. 구비서류

-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[붙임 9]
- 사진 1장(3㎝× 4 ㎝)

※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(그림)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

-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[붙임 10]
- 경력증명서[붙임 19] 자
- 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

※ 경력증명서, 자격(면허)증 사본은 해당 경우에만 제출

- 국내 대학 졸업증명서 사본

※ D-10비자 소지자에 한함

- 건강진단서(신청접수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진단, 발급된 경우만 인정)

※ 건강진단서에는"「정신건강증진 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 질환자 및마약·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"이라는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

※ 진단결과가 '소견, 사료, 추측' 등 모호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

나. 신청절차

- 합격자 발표 후 구비서류를 갖추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자격증 발급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

다. 처리절차

- 서류접수일로부터30일 이내에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자격검정결과, 정상수료가인정 되는 자에 한하여 자격증 발급

* (기존) 1로 시작하는 자격번호 발급, (개정) 3으로 시작하는 자격번호 발급

9 요양보호사 자격의 취소

- 시·도지사는 요양보호사가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(단, 제1항 1~3호의 경우 취소하여야 함)

노인복지법 제39조의14(요양보호사 자격의 취소)

① 시·도지사는 요양보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있다. 다만,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자격을취소하여야한다.

1. 제39조의1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
2. 제39조의9를 위반하여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
3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
4. 영리를 목적으로 노인 등에게 불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알선·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한 경우
5. 자격증을 대여·양도 또는 위조·변조한 경우

②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의 자격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